

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

-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
□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*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·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.

*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○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, 시세의 약 30%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.

□ 외국인 피해자*의 경우,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,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.

* '24년 12월 말 기준 「전세사기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,578건(누계)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(1.5%)을 차지

□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담당 부서	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5232)
		담당자	사무관	방대혁 (044-201-5235)
			주무관	박종길 (044-201-5236)



□ 긴급주거지원 제도 개요

- **대상자:**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*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*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긴급주거지원 가능

- **임대조건:** 최장 2년(최초 6개월 계약) 거주, 외국인 피해자는 최장 6년 거주, 시세 대비 30% 수준의 임대료

□ 신청 절차

구 분	내 용
신청서 작성	· 공공임대 입주신청서 및 긴급주거지원신청서 작성 (신청서 작성 후 피해주택 관할 LH 지역본부에 제출)
필요서류	· 신청자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모두) ·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,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(긴급주거지원 해당) · 경·공매 사건(물건)번호 확인서류(해당 시) · 건물 등기부등본, 경·공매개시 결정 통지 사본 등
주택열람	· 입주 가능한 주택 안내 및 열람 · 피해자 선정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순 으로 주택열람
계약안내	·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한 계약안내
임대차 계약	· 계약금 납부 및 임대차계약 체결
필요서류	· 본인 신분증 및 도장(서명으로 대체가능)
임대주택 입주	· 잔금 납부 및 입주

□ 문의처: LH 콜센터(1600-1004) 또는 LH 지역본부별 주택공급 담당*

* LH 청약플러스 ▶ 주택매도 ▶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